

수원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758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758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28 선고 2022가소28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23. 7. 19.

판결선고 2023. 10.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28. 선고 2022가소28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개명 전 이름: D)의 소개로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판매원인 피고 B를 알게 된 후, 피고 B에게 2016. 10. 11.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고 소외 회사 주식 3,000주를 지급받았고, 같은 달 28. 3,300만 원을 송금하고 소외 회사 주식 9,000주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 B는 2016. 10. 11.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을 받고서 그중 900만 원은 소외 회사 계좌로, 200만 원은 피고 C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같은 달 28.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받고서 그중 2,700만 원은 소외 회사 계좌로, 600만 원은 피고 C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방문판매업, 바이오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9. 9. 23.경 설립된 회사인데, 위 회사의 설립자이자 회장으로 재임하여 온 G는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 제품을 허위 홍보하는 방법으로 2016. 2. 1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1,60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대금 명목으로 892억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합63), 소외 회사는 위 G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위 형사재판에서 ‘대표이사이자 총괄 운영자인 G가 그 업무에 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였고, 금융위원회 신고 없이 주식을 판매하여 증권을 매출하였으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형사재판은 상소를 거쳐 2021. 1. 14.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0. 9. 4. 선고 2020노9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467, 위 형사재판을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8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800만 원을 소외 회사
주식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 C의 수당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11호증, 을가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가 송금한 4,400만 원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 4구좌 12,000주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가 피고 C에게

지급한 800만 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된 위 주식의 판매수수료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받은 소외 회사 주식 매입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 23407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1519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관련자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 1구좌를 1,100만 원에 판매하였고,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 주식 1구좌(1,100만 원)를 판매할 경우 그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주식 1구좌는 3,000주이고, 판매원들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소외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 주식을 주식매수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16. 10. 11.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1구좌 3,000주를 지급받고, 같은 달 28. 3,300만 원을 송금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3구좌 9,000주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 B가 피고 C에게 2016. 10. 11. 원고로부터 받은 1,1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같은 달 28. 원고로부터 받은 3,3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량, 판사 김나연, 판사 박준규